

##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겸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분)** 겸임교원은 국가기관, 교육·연구기관, 지방자치단체, 정부출연기관 및 산업체 등의 상시근무자로서 실무·실기 등 현장실무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를 말하며, 겸임교원은 경력에 따라 겸임교수, 겸임부교수, 겸임조교수로 구분한다.<개정 2019.1.23.>

**제3조(자격)** ① 겸임교원은 교육공무원법과 학교법인 예원예술대학교 정관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여야 하며, 타 대학의 전임교원이나 전임연구원은 겸임교원이 될 수 없다.

1.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, 대학졸업 후 최소한 연구실적 2년 및 교육경력 연수 2년 이상인 자. 단, 연구실적과 교육실적 연수는 대치할 수 있다.

2. 본 대학에서의 교수 및 연구내용이 본직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한 자

3. 본직 기관에서 정규직원으로 상시(유사경력이 3년 이상)근무하고 있는 현직자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는 겸임교원은 별도의 자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.

**제4조(임무)** ① 겸임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에 종사할 수 있다.

1. 본교 정규 교과목 강의 및 실험, 실습교육

2. 대학원생의 논문지도

3. 부속기관 또는 부설연구소 등에 소속되어 전임교원과 공동연구 수행

4. 그 밖에 본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연구 활동

② 겸임교수는 주당 9시간 이내에서 강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총장이 승인한 경우에는 9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할 수 있다.

**제5조(임용절차)** ① 겸임교원은 학과장(전공주임)의 겸임교원 활용계획서를 토대로 교학지원처장의 추천 또는 공개초빙으로 임용한다.

② 겸임교원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계약 임용하되, 제3조의 자격사항을 고려하여 직급을 부여한다.<개정 2019.1.23.>

③ 겸임교원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겸임교원 임용신청서 1부

2. 이력서 1부

3. 학력증명서 각 1부

4. 재직증명서 각 1부

5. 본직 기관장 동의서 1부

6. 추천서 1부(추천 시에 한함)

**제6조(보수)** 겸임교원에 대한 보수는 매해 총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.

**제7조(임용기간 및 처우)** ① 겸임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교학지원처장이 임용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겸임교원은 본교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전임교원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.

③ 총장은 겸임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직할 수 있다. 면직할 경우 이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<개정 2019.1.23.>

④ 기타 겸임교원에 관한 처우로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### 2-3-2-3 겸임교원에 관한 규정

---

부 칙(제정 2015. 1. 1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.
2. (폐지규정) 교직원인사규정의 겸임교원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(2019. 1. 23)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 한다.